

# 남 해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760호 2023. 11. 21.(화)

## 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23-1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(변경) ..... 1

남해군 고시 제2023-144호 남해군관리계획(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 
지형도면 승인 고시 ..... 2

남해군 고시 제2023-145호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.. 12

## 공 고

남해군 공고 제2023-142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 14

남해군 공고 제2023-142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 17

남해군 공고 제2023-1429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..... 27

남해군 공고 제2023-1433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29

남해군 공고 제2023-1450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 37

남해군 공고 제2023-1451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 40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해군

편집 : 기획조정실(860-3044, 행정 3044)

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23-142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(변경)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7일

남 해 군 수

- 1. 하 천 명 : 금양천
- 2. 성 명 : 권성O
- 3. 주 소 :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OO
- 4. 점용목적 : 수도관 및 오수관 설치
- 5. 변경사항 : 오수관 추가 설치(13m<sup>2</sup>→32m<sup>2</sup>)
- 6. 점용위치 :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, 2182-17, 2199번지
- 7. 점용면적 : 32m<sup>2</sup>
- 8. 점용기간 : 2023. 11. 7. ~ 2027. 12. 31.

남해군 고시 제2023-144호

## 남해군관리계획(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남해군관리계획(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) 변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11월 7일

남 해 군 수

1. 남해군관리계획(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: <붙임1>참조
2. 관계도면 : 실음생략

<붙임1>

군관리계획(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 
지형도면고시 조서

1. 용도지구

1.1. 개발진흥지구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구분	도면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치	제한내용	면적(m <sup>2</sup> 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11	상신 개발진흥지구	관광·휴양	창선면 상신리 1-1번지 (상신매립지)일원	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	204,470	경상남도고시 제2007-487호 (2007.11.29)	
변경	11	상신 개발진흥지구	관광·휴양	창선면 상신리 2-1번지 (상신매립지)일원	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	204,600.1	경상남도고시 제2007-487호 (2007.11.29)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1	상신 개발진흥지구	○면적변경(증130.1m <sup>2</sup> ) A=204,470m <sup>2</sup> →204,600.1m <sup>2</sup>	○ 동대만생태공원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구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구역의세분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1	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	관광휴양형	창선면 상신리 2-1번지일원	204,470	증)130.1	204,600.1	경상남도고시 제2007-487호 (2007.11.29)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1	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	○면적변경(증130.1m <sup>2</sup> ) A=204,470m <sup>2</sup> →204,600.1m <sup>2</sup>	○ 동대만생태공원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

### 3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## 3.1. 토지이용계획 (변경)

구분	면 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 (%)	비고	
	기 정	변 경	변경후			
계	204,470	증)130.1	204,600.1	100.0		
체육시설 용지	체육시설소계	66,190	-	66,190	32.4	
	체육시설	44,132	-	44,132	21.6	
	승마장	11,162	-	11,162	5.4	
	주차장	2,780	-	2,780	1.4	
	조경·완충녹지	8,116	-	8,116	4.0	
관광휴양 시설용지	관광휴양소계	8,352	-	8,352	4.1	
	간이역	4,210	-	4,210	2.1	
	보물섬레일파크	3,100	-	3,100	1.5	
	광장 및 근린생활시설	1,042	-	1,042	0.5	
공공시설 용지	공공시설소계	8,904	-	8,904	4.3	
	주차장	1,889	-	1,889	0.9	
	도로	7,015	-	7,015	3.4	
녹지용지	녹지소계	121,024	증)130.1	121,154.1	59.2	
	녹지(유수지)	89,679	-	89,679	43.8	
	조경·완충녹지	4,302	-	4,302	2.1	
	공원	27,043	증)130.1	27,173.1	13.3	

### 3.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## 3.2.1. 도로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3	1	12	국지 도로	374	상신리 1-3 답	상죽리 10-9답	일반 도로	-	경상남도고시 제2007-487호 (2007.11.29)	단지내 도로
기정	소로	2	1	8	국지 도로	36	중로3-1	상신리 1-7	일반 도로	-	남해군고시 제2021-9호 (2021.1.12)	단지내 도로
기정	소로	3	51	6.5	국지 도로	1,897	상신리 353	오용리 1243-4	일반 도로	-	남해군고시 제2021-9호 (2021.1.12)	구역내 L=420

#### 3.2.2. 주차장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주차장	창선면 상죽리 10-9답 일원	2,780	-	2,780	경상남도고시 제2007-487호 (2007.11.29)	
기정	3	주차장	창선면 상신리 1-7답 일원	1,889	-	1,889	경상남도고시 제2007-487호 (2007.11.29)	

#### 3.2.3. 공원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동대만 생태공원	문화 공원	창선면 상신리 663번지 일원	27,043	증)130.1	27,173.1	남해군고시 제2021-9호 (2021.1.12)	

#### 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동대만 생태공원	○ 면적변경(증130.1㎡) (A=27,043㎡ → 27,173.1㎡)	○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

3.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		획 지		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획지 번호	위치	면 적(㎡)			
	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204,470	증)130.1	204,600.1			204,470	증)130.1	204,600.1	
-	I	66,190	-	66,190	I-1	창선면 상죽리 10-9번지 일원	44,132	-	44,132	체육시설
					I-2	창선면 상죽리 10-3번지 일원	11,162	-	11,162	체육시설
					I-3	창선면 상죽리 10-9번지 일원	2,780	-	2,780	체육시설
					I-4	창선면 상죽리 10-15번지 일원	8,116	-	8,116	체육시설
-	II	8,352	-	8,352	II-1	창선면 상신리 2-1번지 일원	4,210	-	4,210	관광 휴양시설
					II-2	창선면 상신리 1-7번지 일원	3,100	-	3,100	관광 휴양시설
					II-3	창선면 상신리 1-7번지 일원	1,042	-	1,042	관광 휴양시설
-	III	8,904	-	8,904	III-1	창선면 상죽리 10-3번지 일원	4,484	-	4,484	공공시설
					III-3	창선면 상신리 1-23번지 일원	1,889	-	1,889	공공시설
					III-4	창선면 상신리 1-23번지 일원	297	-	297	공공시설
					III-5	창선면 상죽리 10-1번지 일원	2,234	-	2,234	공공시설
-	IV	121,024	증)130.1	121,154.1	IV-1	창선면 상죽리 10-2번지 일원	89,679	-	89,679	녹지
					IV-3	창선면 상죽리 10-27번지 일원	4,302	-	4,302	녹지
					IV-4	창선면 상신리 663번지 일원	27,043	증)130.1	27,173.1	녹지

### 3.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체육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	I-1	용도	지정용도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40%이하	
		용 적 률	100%이하	
		높 이	2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-2	용도	지정용도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, 승마장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40%이하	
		용 적 률	100%이하	
		높 이	2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-3	용도	지정용도	주차장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-	
		용 적 률	-	
		높 이	-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-4	용도	지정용도	녹지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건 폐 율		-		
용 적 률		-		
높 이		-		
배 치		-		
형 태		-		
색 채	-			
건 축 선	-			



☑️ 관광휴양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II	II-1	용도	지정용도	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, 제4호, 제15호,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, 관광휴게시설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2	용도	지정용도	보물섬레일파크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		형 태	-	
		색 채	-	
		건 축 선	-	
	II-3	용도	지정용도	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, 제4호,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관광휴게시설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이하	
		용 적 륜	120%이하	
		높 이	3층 이하	
		배 치	-	
형 태		-		
색 채		-		
건 축 선		-		

☑ 공공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III	III-1 III-4 III-5	용 도	지정용도	도로	
			권장용도	-	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	
				건 폐 율	-
				용 적 륜	-
				높 이	-
				배 치	-
				형 태	-
				색 채	-
			건 축 선	-	
	III-3	용 도	지정용도	주차장	
			권장용도	-	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	
				건 폐 율	-
				용 적 륜	-
				높 이	-
				배 치	-
				형 태	-
			색 채	-	
		건 축 선	-		

☑ 녹지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
IV	IV-1 IV-3	용 도	지정용도	녹지	
			권장용도	-	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	
				건 폐 율	-
				용 적 륜	-
				높 이	-
				배 치	-
				형 태	-
				색 채	-
			건 축 선	-	
	IV-4	용 도	지정용도	공원	
			권장용도	-	
			불허용도	지정용도이외의 용도	
				건 폐 율	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				용 적 륜	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				높 이	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				배 치	-
				형 태	-
			색 채	-	
		건 축 선	-		

### 4. 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)

조성계획 총괄표 (변경)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27,043	증)130.1	27,173.1	100.0	
도로 및 광장	6,216	-	6,216	22.9	
조경시설	399	-	399	1.5	
휴양시설	1,888	-	1,888	6.9	
유희시설	966	-	966	3.5	
교양시설	1,011	-	1,011	3.7	
편익시설	943	-	943	3.5	
공원관리시설	75	-	75	0.3	
녹지 및 기타	15,545	증)130.1	15,675.1	57.7	조경·완충녹지

☑ 시설별 조서 (변경)

구분	시설명	기호	부지면적(㎡)			규모/수량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계			27,043	증)130.1	27,173.1		
시설면적			11,498	-	11,498.0		
도로/광장	소계		6,216	-	6,216.0		
	도로		4,160	-	4,160.0		
	광장	가-1	453	-	453.0		
		가-2	473	-	473.0		
		가-3	426	-	426.0		
		가-4	425	-	425.0		
조경시설		가-5	279	-	279.0		
	소계		399	-	399.0		
	습지탐방로	나-1	216	-	216.0		
		나-2	183	-	183.0		
		꽃잎트렐리스 ①				1	
		꽃잎조형물 ②				6	
		보행교 ③				1	
		테크탐방로 ④				1	
휴양시설	소계		1,888	-	1,888.0		
	잔디광장	다-1	1,260	-	1,260.0		
	휴게쉼터	다-2	339	-	339.0		
	테크쉼터	다-3	289	-	289.0		
		퍼골라 ⑤				7	
		막구조퍼골라 ⑥				7	
		휴게트렐리스 ⑦				1	
유희시설	소계		966	-	966.0		
	테마놀이터	라	966	-	966.0		
	그물놀이대	⑧				1	
교양시설	소계		1,011	-	1,011.0		
	테마정원	마-1	563	-	563.0		
		마-2	290	-	290.0		
		마-3	158	-	158.0		
편익시설	소계		943	-	943.0		
	지역특산물장터	바-1	750	-	750.0		
	먹거리쉼터	바-2	193	-	193.0		
공원관리시설	소계		75	-	75.0		
	관리사무소	사-1	60	-	60.0		매표소 포함
		사-2	15	-	15.0		
녹지/기타	소계		15,545	증)130.1	15,675.1		
	녹지		15,545	증)130.1	15,675.1		

남해군 고시 제2023-145호

## 우물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, 제61조에 의거 우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, 「농어촌정비법」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15일

### 남 해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우물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3. 사업비 : 2,025,000천원(국비 1,480,000, 지방비 545,000), 자부담 별도(43,331천원)
4. 주요사업내용
  - 생활·위생 인프라 : 마을안길 정비(94.7㎡), 안전펜스 설치 1식, 마을안전시설 정비 및 조성(CCTV 등 1식), 하수시설 조성 1식, 재래식화장실 정비(2호)
  - 주택정비 지원 : 빈집정비(17호), 슬레이트지붕개량(12호), 집수리(4호)
  - 마을환경 개선 : 마을주차장 조성(319㎡), 마을공원조성(277㎡), 마을회관정비(1식)
  -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: 마을공원가꾸기 포럼, 선진지 견학 등

※ 분야별 사업내용

(단위 : 천원)

사업 부문	세부사업 (공 종)	사업비 / (외서)			
		계	국비	지방비	(자부담)
합 계		2,025,000	1,480,000	545,000	43,331
생활·위생 · 안전 인프라	소 계	1,005,323	778,846	226,477	-
	■ 마을안길정비	84,617	67,694	16,923	-
	■ 안전웬스설치	-	-	-	-
	■ 마을안전시설정비 및 조성	94,645	75,716	18,929	-
	■ 하수시설조성	814,194	625,942	188,252	-
	■ 재래식화장실정비	11,867	9,494	2,373	-
주택 정비	소 계	362,248	217,350	144,898	43,331
	■ 빈집정비	138,463	83,078	55,385	4,991
	■ 슬레이트지붕개량	200,316	120,190	80,126	30,184
	■ 집수리	23,469	14,082	9,387	8,156
마을 환경 개선	소 계	357,084	271,017	86,067	-
	■ 주차장 조성	153,408	122,727	30,681	-
	■ 마을공원 조성	114,335	82,245	32,090	-
	■ 마을담장 정비	81,800	60,012	21,788	-
	■ 마을회관 정비	7,541	6,033	1,508	-
휴먼 케어	소 계	25,311	17,718	7,593	-
	■ 요가교실	6,182	4,327	1,855	-
	■ 치매예방 교실	3,064	2,145	919	-
	■ 노래교실	7,065	4,946	2,119	-
	■ 백서제작	9,000	6,300	2,700	-
주민 역량 강화	소 계	13,544	10,836	2,708	-
	■ 리더교육	-	-	-	-
	■ 주민교육	-	-	-	-
	■ 마을발전워크숍	-	-	-	-
	■ 선진지견학	4,500	3,600	900	-
	■ 마을가꾸기포럼	9,044	7,236	1,808	-
제경비	소 계	261,490	184,233	77,257	-
	■ 플랜수립	48,569	33,998	14,571	-
	■ 세부설계비	53,761	37,632	16,129	-
	■ 공사감리비	125,494	87,846	37,648	-
	■ 사업관리비	26,099	18,270	7,829	-
	■ 잡지출	7,567	6,487	1,080	-

5. 사업시행자 : 남해군수(수탁기관 :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)

6. 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(4년간)

7. 기타(시행계획 열람 장소)

-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경제과(☎ 055-860-36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남해군 공고 제2023-1425호

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일

남 해 군 수

- 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- 2. 개정이유 : 2023년 정책지원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업무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총 정원 변동 없이 정비하고자 함
- 3. 주요내용
  - 가. 남해군 의회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반영
    - 1) (집행기관) 660명 ⇒ 657명(감 3)
    - 2) (의회사무기구) 16명 ⇒ 19명(증 3)
- 4. 의견제출
  - 가. 의견제출기간 : 2023년 11월 23일까지
    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, 남해군청 행정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113, 팩스 055-860-3737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 :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(전화 055-860-31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660명” 을 “657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6명” 을 “19명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해군 공고 제2023-1426호

##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」
2. 개정이유 : 2023년 정책지원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직렬·직급별 정원 조정
3. 주요내용
  - 가. [별표]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
    - 1) 의회사무과 6급 직렬확대
      - (기존) 행정 5
      - (변경) 행정 3, 행정·세무 1, 행정·전산 1
    - 2) 의회사무과 7급 직렬·정원 조정(정원 증1)
      - (기존) 행정 3, 운전 1
      - (변경) 행정 2, 운전 1, 속기 2
    - 3) 의회사무과 8급 직렬·정원 조정(정원 증1)
      - (기존) 행정 1, 속기 2
      - (변경) 행정 4

- 4) 의회사무과 9급 직렬·정원 조정(정원 증1)
  - (기존) 행정 1
  - (변경) 행정 2
- 5) 본청 7·8·9급 행정 직렬 각 1명 감(정원 감3)

**4. 의견제출**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3년 11월 23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, 남해군청 행정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113, 팩스 055-860-3737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**5. 기 타 :**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(전화 055-860-31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규칙 제 호

##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(제2조 관련)

직종	계급	직렬	총계	본청 소계	의회 사무 과	직속기관		읍면	
						보건 소	농업 기술 센터	읍	면
총 계		합 계	676	362	19	68	73	19	135
		정무직	1	1					
		일반직	646	359	19	68	46	19	135
		별정직	1	1					
		연구직	1	1					
		지도직	27				27		
정무직 계	군수	정무직	1						
일반직 계			646	359	19	68	46	19	135
일반직	4급 합계		5	4		1			
일반직	4급	서기관	2	2					
일반직	4급	서기관· 기술서기관	2	2					
일반직	4급	기술서기관	1			1			
일반직	5급 합계		37	17	3	2	5	1	9
일반직	5급	행정	5	4	1				
일반직	5급	행정·사회복지	2	2					
일반직	5급	행정·해양수산	3	2					1
일반직	5급	행정·시설	6	6					
일반직	5급	행정·농업· 해양수산	1						1
일반직	5급	행정·농업· 시설	1						1
일반직	5급	행정·사회복지 ·농업·시설	3					1	2
일반직	5급	행정·사회복지 ·환경·시설	1		1				
일반직	5급	행정·농업· 해양수산·보건	1		1				
일반직	5급	행정·시설· 해양수산·보건	1						1
일반직	5급	행정·사회복지· 해양수산	1						1

직종	계급	직렬	총계	본청 소계	의회 사무 과	직속기관		읍면	
						보건 소	농업 기술 센터	읍	면
일반직	5급	행정·녹지· 시설	2						2
일반직	5급	행정·사회복지· 시설	1	1					
일반직	5급	행정·환경· 시설	2	2					
일반직	5급	농업·농촌지도							
일반직	5급	행정·농업· 농촌지도	3				3		
일반직	5급	행정·농업· 수의·농촌지도	1				1		
일반직	5급	행정·농업· 녹지·농촌지도	1				1		
일반직	5급	행정·보건· 간호·의료기술	1			1			
일반직	5급	보건·간호·의료 기술·보건진료	1			1			
일반직	6급 합계		166	91	5	12	16	5	37
일반직	6급	행정	22	18	3			1	
일반직	6급	세무	1	1					
일반직	6급	해양수산	6	6					
일반직	6급	보건진료	3			3			
일반직	6급	시설	6	6					
일반직	6급	행정·전산	2	1	1				
일반직	6급	행정·세무	4	3	1				
일반직	6급	행정·사회복지	9	9					
일반직	6급	행정·사서	1	1					
일반직	6급	행정·사회복지 ·전산	7						7
일반직	6급	행정·세무· 사회복지	1					1	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	10	1					9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공업	2	2					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공업·녹지	2	2					
일반직	6급	행정·녹지	1						1
일반직	6급	행정·해양수산	3	3					

직종	계급	직렬	총계	본청 소계	의회 사무 과	직속기관		읍면	
						보건 소	농업 기술 센터	읍	면
일반직	6급	행정·보건· 의료기술	1			1			
일반직	6급	행정·보건· 간호·의료기술	2			2			
일반직	6급	행정·보건· 환경·농업	1	1					
일반직	6급	행정·보건· 환경·공업							
일반직	6급	행정·시설	22	21					1
일반직	6급	보건·간호· 의료기술	6			6			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수의	1				1		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수의·농촌지도	1				1		
일반직	6급	농업·녹지	1				1		
일반직	6급	농업·농촌지도	3				3		
일반직	6급	행정·세무· 농업	3					1	2
일반직	6급	행정·세무· 농업·보건	1						1
일반직	6급	행정·세무· 농업·해양수산	1						1
일반직	6급	행정·세무· 시설·해양수산	1						1
일반직	6급	행정·사회복지 ·보건	5	1					4
일반직	6급	행정·사회복지 ·농업	1						1
일반직	6급	행정·사회복지 ·농업·시설	1					1	
일반직	6급	행정·전산· 방송통신	1	1					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녹지	4				4		
일반직	6급	행정·환경	3	3					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시설	9	4					5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해양수산·시설	1						1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농촌지도	5				5		
일반직	6급	농업·공업· 농촌지도	1				1		
일반직	6급	행정·녹지· 시설	1						1

# 남 해 군 공 보

2023년 11월 21일

제 760호 (23)

직종	계급	직렬	총계	본청 소계	의회 사무 과	직속기관		읍면	
						보건 소	농업 기술 센터	읍	면
일반직	6급	행정·환경· 시설	3	3					
일반직	6급	행정·농업· 해양수산	2						2
일반직	6급	행정·해양수 산·시설	1	1					
일반직	6급	행정·전산· 농업·방송통신	1					1	
일반직	6급	운전	1	1					
일반직	6급	통신운영	1	1					
일반직	6급	전기운영· 기계운영	1	1					
일반직	7급 합계		196	111	5	30	9	8	33
일반직	7급	행정	30	20	2			2	6
일반직	7급	세무	6	2				1	3
일반직	7급	사회복지	10	3				1	6
일반직	7급	전산	1	1					
일반직	7급	공업	6	5					1
일반직	7급	해양수산	8	8					
일반직	7급	보건	8			8			
일반직	7급	의료기술	1			1			
일반직	7급	간호	8			8			
일반직	7급	보건진료	9			9			
일반직	7급	환경	3	3					
일반직	7급	시설	14	13				1	
일반직	7급	행정·세무· 전산	2	2					
일반직	7급	행정·세무· 농업	4	1					3
일반직	7급	행정·전산· 농업	1						1
일반직	7급	행정·사회복지	14	6				2	6
일반직	7급	행정·농업	7				3		4
일반직	7급	행정·농업· 녹지	7	2			4		1



직종	계급	직렬	총계	본청 소계	의회 사무 과	직속기관		읍면	
						보건 소	농업 기술 센터	읍	면
일반직	7급	행정·농업· 수의	1				1		
일반직	7급	행정·보건· 의료기술	2			2			
일반직	7급	행정·환경	3	3					
일반직	7급	행정·시설	23	23					
일반직	7급	세무·전산	1	1					
일반직	7급	행정·시설· 방송통신	1	1					
일반직	7급	행정·해양수산 ·시설	4	4					
일반직	7급	농업·시설	3	2					1
일반직	7급	보건·간호	1			1			
일반직	7급	보건·간호· 의료기술	1			1			
일반직	7급	보건·환경							
일반직	7급	행정·환경· 시설							
일반직	7급	행정·사회복지 ·보건	1	1					
일반직	7급	행정·전산· 방송통신	1	1					
일반직	7급	행정·녹지· 시설	2	2					
일반직	7급	행정·세무· 농업·시설	3	1				1	1
일반직	7급	운전	7	6	1				
일반직	7급	전기운영· 기계운영	1				1		
일반직	7급	녹지							
일반직	7급	속기	2		2				
일반직	8급 합계		163	92	4	20	9	3	35
일반직	8급	행정	29	18	4		1	1	5
일반직	8급	세무	3	2					1
일반직	8급	사회복지	13	6				1	6
일반직	8급	전산	1	1					
일반직	8급	농업	3				3		

직종	계급	직렬	총계	본청 소계	의회 사무 과	직속기관		읍면	
						보건 소	농업 기술 센터	읍	면
일반직	8급	녹지	2	1			1		
일반직	8급	해양수산	11	11					
일반직	8급	환경	3	3					
일반직	8급	보건·세무							
일반직	8급	의료기술	5			5			
일반직	8급	보건진료	6			6			
일반직	8급	시설	14	10					4
일반직	8급	방재안전	1	1					
일반직	8급	행정·세무	5	2					3
일반직	8급	행정·사회복지	8	3					5
일반직	8급	행정·농업· 시설	14	3			2	1	8
일반직	8급	행정·전산	2	2					
일반직	8급	행정·해양수산 ·전산	2	2					
일반직	8급	행정·전산· 사서	1	1					
일반직	8급	행정·환경	3	2					1
일반직	8급	행정·시설	10	10					
일반직	8급	행정·시설· 공업							
일반직	8급	행정·사회복지 ·녹지·시설	1	1					
일반직	8급	농업·녹지	2				2		
일반직	8급	전산·방송통신	3	3					
일반직	8급	해양수산·시설	1	1					
일반직	8급	보건·간호	8			8			
일반직	8급	행정·보건· 환경							
일반직	8급	운전	7	6		1			
일반직	8급	숙기	-		-				
일반직	8급	공업	5	3					2

# 남 해 군 공 보

(26) 제 760 호

2023년 11월 21일

직종	계급	직렬	총계	본청 소계	의회 사무 과	직속기관		읍면	
						보건 소	농업 기술 센터	읍	면
일반직	9급 합계		77	44	2	3	5	2	21
일반직	9급	행정	20	12	2				6
일반직	9급	세무	4	2					2
일반직	9급	사회복지	8	3				1	4
일반직	9급	농업	2				2		
일반직	9급	해양수산	3	3					
일반직	9급	환경	3	3					
일반직	9급	시설	5	2					3
일반직	9급	방재안전	1	1					
일반직	9급	의료기술	1			1			
일반직	9급	행정·시설	10	10					
일반직	9급	행정·세무· 전산	2	1					1
일반직	9급	행정·사회복지	5	4					1
일반직	9급	행정·해양수산	1	1					
일반직	9급	행정·농업· 농지·공업	7	2			2		3
일반직	9급	행정·전산· 보건	1			1			
일반직	9급	운전	2			1	1		
일반직	9급	사무운영	2					1	1
일반직	전문경 력관 나군	농기계교관	2				2		
별정직 계	별정6 급상당	일반비서	1	1					
연구직 계	연구사	기록연구	1	1					
지도직 계	지도사	농촌지도	27				27		

남해군 공고 제2023-1429호

###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

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6일

남 해 군 수

#### ○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

면허번호	양식업의종류 (양식업방법)	양식물	어장 위치	면허 면적 (㎡)	면허기간	어업권자		비고
						주 소	성 명	
남해양식 제624호	패류양식 (바닥식)	새꼬막	서면 유포	99,000	2023.11.18 2033.11.17 (10년)	남해군 서면 노구리	유포어촌계	329호 재개발

※ '23/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

#### ○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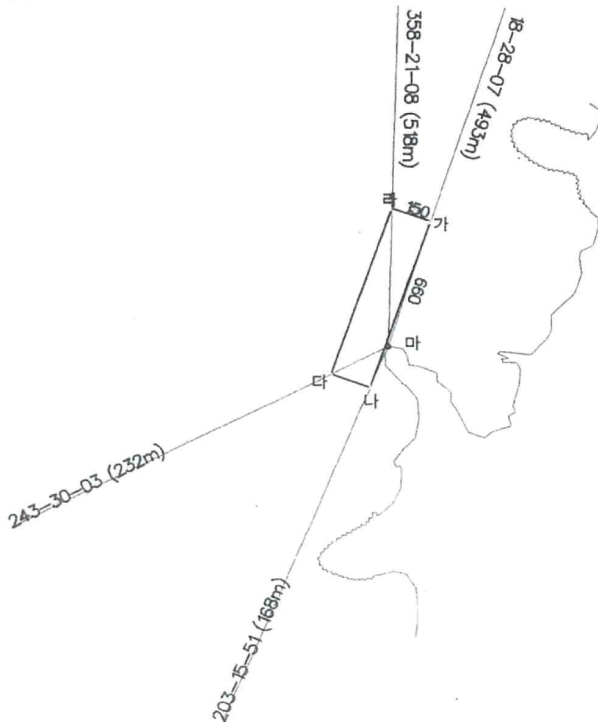
면허번호	양식업의종류 (양식업방법)	양식물	어장 위치	면허 면적 (㎡)	면허기간	어업권자		비고
						주 소	성 명	
남해양식 제329호	패류양식 (바닥식)	새꼬막	서면 유포	99,000	2013.11.18 2023.11.17	남해군 서면 노구리	유포어촌계	

# 남해양식 어업면허 제 624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

1. 어업의 종류와 명칭 : 패류양식 축척 :  $\frac{1}{25,000}$
2. 어구 또는 양식방법 : 살포식
3. 수면의 위치 : 경상남도 남해 시(군) 서 읍,면,동 유포 리 지선
4. 기점 및 각점 :  
 -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: 남해 시(군) 서 읍,면,동 유포 리  
 - 보조기점  
 (가): 18° 28' 493 미터의 점 (나): 203° 15' 168 미터의 점  
 (다): 243° 30' 232 미터의 점 (라): 358° 21' 518 미터의 점  
 \* 가, 나, 다, 라 각점의 좌표 아래표시
5. 수면의 구역 : 아래 도면에서 가, 나, 다, 라 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
6. 면 적 : 99,000 m<sup>2</sup>



WGS		
구분	X(N)	Y(E)
가	34-52-07.74	127-48-42.47
나	34-51-47.64	127-48-33.52
다	34-51-49.31	127-48-27.97
라	34-52-09.42	127-48-36.92
마	34-51-52.62	127-48-36.17




 範宇技術團 남해해양실계사무소  
 BUM WOO ENGINEERING CO., LTD.  
 TEL. (055)863-1356



남해군 공고 제2023-1433호

##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7일

남 해 군 수

1. **자치법규명** : 「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
2. **개정이유** :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(시행 `23.4.27.)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
3. **주요내용**
  - 자율방범 활동 경비 지원 범위(안 제3조)
  - 절차, 정산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7조)
  - 자율방범 활동에 관한 교육(안 제8조)
4. **의견제출**
  - 가. 의견제출기간 : 2023년 11월 28일까지
    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, 남해군청 행정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141, 팩스 055-860-3737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우편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 :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향우대외협력팀(☎ 055-860-314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남해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군수의 책무)** 남해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남해군 각 읍·면 자율방범대 및 남해군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자율방범대등” 이라 한다)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3조(지원)** 군수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법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
2.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
3.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**제4조(지원 절차 등)**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3조에 따라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
- 1.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
- 2. 사업계획서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남해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법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도 및 감독)**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남해경찰서장에게 정기·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남해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정산)**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
- 2.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

**제7조(지원중단 등)**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- 1.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- 2.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
- 3.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- 4.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**제8조(교육)** 군수는 남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,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
**제9조(포상)**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남해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휼방법대등 또는 대원에게 「남해군 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**{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(상/하반기) 지원금 신청서 }**

(읍·면자율방범대, 남해군자율방범연합대)

1. 사 업 명:

2. 사업내용:

※기간, 장소, 사업내용 등 기재

3. 추진계획:

4.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항목	계	신청금	산출기초
계				

「남해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월      일

신청인: 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남해군수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**[20○○. (상/하반기) 지원금 정산서]**

(읍·면자율방법대, 남해군자율방법연합대)

(단위: 원)

예산과목					수령액	집행액	잔액	이자 수입
정책	단위	세부 사업	편성목	통계목				

**[실비 세부 집행내역]**

(단위: 원)

일 자	수령액	지출액	내 용	잔 액
합 계				

※ ○○ 자율방법대·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(대장, 총무, 회계담당 3인 결재)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

년 월 일

지출관: ○○자율방법대·연합대장 (인)

남해군수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지 출 결 의 서

제000호	결재	담당자	총무	대장
지출과목 (비목)	매식비/ 소모품 구입비/ 피복비 등		지출일	20 .00.00.
지출금액	일금 한글기재 원정 (W 숫자 기재)			
지 출 내 용				
사용처			지출방법	

- 건 명:
- 일 자: 20 . 00. 00.(0요일)
- 금 액: 원
- 지출세부내역(산출근거):

※ 첨부: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

남해군수 귀하

남해군 공고 제2023-1450호

##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### 남 해 군 수

- 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- 2. 개정이유 : 2023년 기준인력 반영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
- 3. 주요내용 : 군 본청 분장사무 조정

#### 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3년 11월 23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, 남해군청 행정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113, 팩스 055-860-3737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가.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

- 1)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- 2)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

나.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(전화 055-860-31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#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군정기획, 협력조정” 을 “군정기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청년인구” 를 “인구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향우대외협력” 을 “대외협력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프로젝트” 를 “산업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정착” 을 “청년 정착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복합민원, 공공건축” 을 “복합민원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건설관리” 를 “건설관리, 공사관리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남해군 공고 제2023-1451호

##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남 해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2. 개정이유 : 인력 재배치에 따른 군 본청 분장사무 조정

### 3. 주요내용

- [별표1] 군 본청 사무분장표(제4조 관련)

- 1) 기획조정실 협력 조정 정책에 관한 사항 삭제
- 2)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정책 이관 및 인구정책 강화
- 3) 관광진흥과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 강화
- 4) 경제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추가
- 5) 도시건축과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삭제
- 6) 건설교통과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3년 11월 23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, 남해군청 행정과
- 2) 연락처 : 전화 055-860-3113, 팩스 055-860-3737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가.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

- 1)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- 2)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

나.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(전화 055-860-31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규칙 제 호

##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